

1.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
  2.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·교육
  3.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
  4.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·장비등의 동원방법
  5. 화학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·복구 계획
  6.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  - 가.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만으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처에 한계가 있음
  - 나. 이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 

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의2 신설)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6998호

**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 
2019년 1월 3일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2의 제목 “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” 를 “(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” 로 하

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” 를 “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진대피소의” 를 “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의” 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 다만,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- 1. 개정이유
  - 가. 폭염 및 한파 등에 대비한 대피소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 게시의무,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활용방안을 명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- 2. 주요내용
  - 가. 지진대피소 뿐만 아니라 무더위쉼터·한파쉼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(안 제 43조의2)

◆ **서울특별시조례 제6999호**

**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**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 
 2019년 1월 3일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“지하”란 개발·이용·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.
- 2. “지반침하”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·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.
- 3. “지하개발”이란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3호에